

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2의6] <개정 2011.11.1>

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(제7조의2제4항 관련)

구분	계급	· 별표 2 제1호가목·나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	· 별표 2 제1호다목, 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	· 별표 2 제1호라목,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	· 연구사 및 지도사
		· 별표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	· 별표 2의2 제1호나목, 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	· 별표 2의2 제1호다목,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	
연구 경력	박사	8년	4년	—	—
	석사	12년	8년	4년	—

비고: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을 말한다.